

1. 개정이유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7개월 연장하며,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5명을 5급 25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명칭을 특허분석과로 변경하고, 청장 직속에서 특허심사기획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을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특허분석과를 두되,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및 가전제품심사과”로, “방송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특허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특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운영 및 관리
3.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4.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운영
5.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별표 2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4”를 “819”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00”을 “375”로 한다.

별표 9 가목 1)의 평가기간란, 같은 목 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을 “특허분석과는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2년 5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022년 6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

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5명은 2025년 5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5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5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4(특허빅데이터담당관) ①</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u>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u> <u>항에 따라 청장 밑에 특허빅데</u> <u>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u> <u>②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서기</u> <u>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u> <u>다.</u> <u>③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u> <u>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u> <u>다.</u> <u>1.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u> <u>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u> <u>(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u> <u>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u> <u>획의 수립·시행</u> <u>2.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DB 구</u> <u>축·운영 및 관리</u> <u>3.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u> <u>모델 개발 및 확산</u> <u>4.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을</u> <u>위한 플랫폼의 구축·운영</u> <u>5.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에</u> <u>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u>	<u><삭 제></u>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생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⑪ (생략)

<신 설>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제
특허출원심사2팀, 특허분석과를
두되,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
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
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및 가전제품심사과 -----

----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
며, 특허분석과장은 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

③ ~ ⑪ (현행과 같음)

⑫ 특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
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u>(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u>2.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운영 및 관리</u> <u>3.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u> <u>4.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운영</u> <u>5.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u>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 ----- ----- <u>특허분석과는 2022년 12월 31일</u>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신 · 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794</u>	• • <u>819</u>	+25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400</u>	• <u>375</u>	-25
• •	• •	• •	